

		보 도 자 료		
		배 포 일 2021. 7. 23.(금) 총 4매(본문 2, 참고 2)		
담당 부서	유통정책과	담당 자	• 과장 임태훈, 사무관 한지용, 주무관 박혜진 • ☎ (044) 200-5440, 5449, 5450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품질관리과	담당 자	• 과장 김남용, 사무관 유승재, 주무관 이수진 • ☎ (051)400-5750, 5795, 5796	
보 도 일 시		2021년 7월 26일(월)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통신·방송인터넷은 7. 25.(일) 11:00 이후 보도 가능		

여름 휴가철 맞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나선다

- 보양식 및 야외 간편식 수산물 집중점검, 7. 26.부터 10일간 실시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7월 26일(월)부터 8월 4일(수)까지 10일간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여름 휴가철을 맞아 캠핑 등 야외활동용 간편(조리)식이나 여름 보양식으로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산물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여름철 보양식 재료인 민물장어, 미꾸라지와 간편조리식 재료인 오징어, 낙지 등이며, 이 외에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활참돔, 활가리비* 등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2021.상반기 수입실적(전년대비 %) : 활참돔 2,266톤(142%), 활가리비 4,245톤(139%)
 2021.2분기(4. 1.~7. 16.) 활어패류 상위 주요 수입품목 : 활가리비(3,003톤), 활미꾸라지(2,375톤), 활참돔(1,680톤), 활농어(1,396톤), 활낙지(1,323톤) 등

대표적인 보양식 수산물인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국내산과 수입산의 가격 차이가 크고 국내 생산량보다 수입량(중국 등)이 많아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가 빈번한 품목*으로,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차단할 예정이다.

* 거짓표시현황(5년간 합계, 건) : 활뱀장어 46, 활낙지 33, 미꾸라지 27

참돔은 횡감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대중성 품목으로 수입량이 많으나, 국내산과 외형이 유사하여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품목이고, 가리비는 '조개구이', '횃집' 등에서 주로 유통·판매되며 살아있는 상태로 수족관에 보관하면서 원산지 미표시 위반행위*가 높은 품목이다.

* 위반현황(5년간, 건) : 활참돔(미표시 등 132, 거짓 27), 활가리비(미표시 등 128, 거짓 28)

활참돔, 활가리비 등 행락지 횡감용 수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수입수산물(17개 품목) 대해 수입 통관 후 유통단계별로 거래내역을 신고·관리하는 시스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천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148명과 소비자 단체를 포함한 수산물명예감시원 800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점검 대상업소를 사전에 선별하여 출장경로 및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한편, 지역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지침에 맞게 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수산물 판매자는 투명한 원산지 표시만이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식하고, 소비자는 수산물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 참여가 매우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원산지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채널 '수산물원산지표시'로 적극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등의 일부 자료는 해양수산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참고 1 |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 개요

- 개요 (법적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10.8.4 시행)
 - 수산물과 그 가공품 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
 - * 도입시기 : 수입수산물('94), 국산('95), 가공품('96), 소금('11) / 음식점 표시('12년)
- (대상품목) 일반 유통·판매업 : 모든 수산물/ 음식점 : 15개 품목

구분	대상 품목
유통·판매업 (모든 수산물)	식용 가능한 모든 수산물(국내산·수입산) 및 그 가공품 - 국내·원양산 : 192개, 국내가공품 : 66개, 수입수산물 : 24개
음식점 (15개 품목)	넙치(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다만, 수족관 등에 보관·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은 모두 표시 대상

* '12년(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 '13년 추가(고등어, 명태, 갈치) → '17년(오징어, 꽃게, 참조기) → '20년(다랑어, 아귀, 주꾸미)

- (단속·처벌) 해수부(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 지자체 등
 -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 위반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주요포털,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등에 공개
 - 상습 위반자(2년간 2회 이상)에 대한 과징금 신설('15.6 시행, 최고 3억원) 및 **형량하한제*** 신설('17.6 시행)
 - * 5년 이내 재범자,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

참고 2 | 원산지표시 단속현장 사진

